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42호, 2017.3.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업자"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을 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등록 받을 수 있다.

제4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 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의체 구성·운영) ①종합건설업자는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 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생협의체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①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2(해외건설 동반진출에 대한 우대 등)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①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

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삭 제>

제11조(평가기준 등)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제12조(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8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제13조(평가시기 및 적용기간) ①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발표내용에는 제16조에 따른 우대사항의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②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대한건설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장 등 다른 건설업자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별지 3호 서식)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별지 6호 서식)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별지 7호 서식)
6. 협력업자 지원 현황(별지 8호 서식)
7. 상생협업체 운영 현황(별지 9호 서식)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별지 10호 서식)
9.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별지 11호 서식)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별지 12호 서식)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PQ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① 제1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사 발주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PQ심사시 우대사항
 - 가. 90점이상 : 5점 가산
 - 나. 80점이상 ~ 90점미만 : 4점 가산
 - 다. 70점이상 ~ 80점미만 : 3점 가산
 - 라. 60점이상 ~ 70점미만 : 2점 가산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삭 제>
2. PQ심사 때 :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우대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610호, 2015.8.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 점
1. 공동도급실적 (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1) 60%이상 (2) 50%이상 ~ 60%미만 (3) 40%이상 ~ 50%미만 (4) 30%이상 ~ 40%미만	5 5 4 3 2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1) 30%이상 (2) 25%이상 ~ 30%미만 (3) 20%이상 ~ 25%미만 (4) 10%이상 ~ 20%미만	5 5 4 3 2
2. 하도급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50%이상 (2) 40%이상 ~ 50%미만 (3) 30%이상 ~ 40%미만 (4) 15%이상 ~ 30%미만	20 20 15 10 5
3. 협력업자 육성 (58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현금성 결제비율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④ 전자 하도급계약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40 30 15 8 5 2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0

평가분야	항목별	배점
	(1) 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다. 상생협업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업체 운영실적	5 2 2 1 3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5건 이상 (2) 3건 ~ 4건 (3) 1건 ~ 2건	3 3 2 1
4. 신인도(1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2 1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없는 경우) -1 -2 -3 -5 -10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

평가분야	항목별	배점
1. 하도급실적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25
	(1) 45%이상	25
	(2) 35%이상 ~ 45%미만	20
	(3) 25%이상 ~ 35%미만	15
	(4) 15%이상 ~ 25%미만	10
2. 협력업자 육성 (53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
	② 현금성 결제비율	8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
	④ 전자 하도급계약	2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10
	① 재무분야	5
	② 교육분야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5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 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다. 상생협업체 운영	5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운영 현장수 비율	2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2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1	
(2) 협업체 운영실적	3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	
(1) 3건 이상	3	
(2) 2건 이상	2	
(3) 1건 이상	1	
3. 신인도(2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2) 시·도지사 표창 1회	1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 (없는 경우)	

평가분야	항목별	배점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 -2 -3 -5 -10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1. 대기업의 공동도급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한 한다.
2.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은 1점(기본점수)를 부여한다.
3. '협력업자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등 재무지원은 최소 1백만원이상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4. 상생협업체 운영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상생협업체 운영을 의무화 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 운영 현장수' 비율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사의 공사현장이 모두 상생협업체 운영 의무 대상인 업체의 경우 '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 운영 현장수' 비율을 1점(기본점수)으로 한다.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붙임1>

하도급률 “적정” 확인서 (예시)

공 사 명 (신고번호)		공 종	
입찰방법	<input type="checkbox"/> 적격심사 <input type="checkbox"/> 최저가 <input type="checkbox"/> 턴키 <input type="checkbox"/> 대안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주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상호(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민 간		
공사기간 (계약년월) (착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 하도급 공사 내용 >			
공 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액(하도급부분)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p>상기 하도급공사의 “하도급률”이 “적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font-size: 1.2em;">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발주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수급인(대표사)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하수급인 : (서명 또는 인)</p> <p>대한건설협회장 귀하</p>			
<p>※ 기재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도급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붙임2>

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 (예시)

1. 지급업체 (원도급업체)

회사명

대표자

2 수령내용

수령일자

세부내용

수령금액

합 계

우리 회사는 상기 금액을 20 년 기술개발비 항목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령자(하수급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공인회계(세무)사 상 호 :

대표자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붙임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등록증 사본 1부

<붙임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 (예시)

1. 신청사 개 요	상 호(대표자)	(인)	업종 및 등록번호					
2. 원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사명 (신고번호)				공종			
	공사 기간	(계약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공사진척 및 대금 수령내용	구 분	회 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수령일자	수령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3. 하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종				업체명(대표자)			
	공사 기간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공사진척 및 대금 지급내용	구 분	회 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건설산업 상생협약체 협정서 (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상생협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간 현장별 상생협약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협정은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 (구성)

- ① 협의체는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의 관련 인원(별지 참조)으로 하고, 위원장은 발주자의 ○○장, 간사는 발주자 ○○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 ①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주관 등 회의를 총괄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일지 및 회의록을 관리한다.
- ③ 각 위원은 성공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력 과제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는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는 월간회의 (매월 ○○일) 및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지 않는 주간회의를 개최하되, 주간회의는 공정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협의체 역할)

협의체는 “상생협력매뉴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 ① 위원장은 건설공사 계약과 함께 협의체 협정서를 체결하고 체결 즉시 발주처 ○○에 제출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회의록 첨부)를 매월 ○일까지 발주자 ○○에 제출한다.

- 발 주 자 : ○○○ 개발팀장 ○○○ (인)
- 원수급자 : ○○○○ 현장대리인 ○○○ (인)
- 하수급자 : ○○○○ 현장소장 ○○○ (인)
○○○○ 현장소장 ○○○ (인)
○○○○ 현장소장 ○○○ (인)
○○○○ 현장소장 ○○○ (인)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 (예시)

평가일시	년 월 일 (요일)	평가자	원수급인 (인)
공사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상생협약체 구성원	발 주 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 점	등급 및 기준					평 점
			우수 (1.0)	양호 (0.9)	보통 (0.8)	미흡 (0.7)	불량 (0.6)	
최종평점								
계		100						
상 생 분위기 조 성 (20)	• 부서장의 경영방침	5						
	• 상생협력시행계획의 적정성	7						
	• 대내외홍보 및 언론보도 활동 노력도	3						
	• 행정사항(지시사항 등) 이행 충실도	5						
재무지원 (35)	• 재무지원 건수	10						
	• 재무지원의 실효성	15						
	• 재무지원의 타 현장 적용성	10						
기술지원 (25)	• 기술지원 건수	10						
	• 기술지원의 실효성 및 적정성	10						
	• 타 현장의 적용성	5						
교류확대 (20)	• 교류확대 건수	5						
	• 교류확대 실효성 및 적정성	10						
	• 타 현장의 적용성	5						
운영성과 요 약	※ 입증서류 붙임 참조							
		확인자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

신 청 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 - 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C)(국내분)		⑩총협력업자수계(D)	
1. 공동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1)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H) : (2)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H/C) :		신청점수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1)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F) : (2)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기성액(E) : (3)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E) :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20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0점)	(1)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2)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58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④전자하도급계약 (2점) (2) 협력업자의 재무(5점) 및 교육지원 (5점)		신청점수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1)기술개발비용 지원 (2)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3)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업체 운영 (5점)	(1)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 운영 현장수(2점) (2)협업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1)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 5건 이상 3점, 3~4건 2점, 1~2건 1점		신청점수
4. 신인도 (1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2점) : 회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2점) : 회 (3)시·도지사 표창(1점)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10점)	(1)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2)과태료 : 회 (3)고발·벌금 : 회 (4)과징금 : 회 (5)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신청점수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 협력업자 지원 현황 7. 상생협업체 운영 현황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1.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3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협력업자 등록일자	건설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1								
2								
3								
4								
5								
6								
7								
8								
9								
10								
총 협력업자수					개사			

-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 협력업자로 불인정.
- 2. ‘전년도협력업자여부’는 직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만 “O” 표시할것.

[별지 4호 서식]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신고번호 / 공사기간	공사명 / 발주자명	신청사의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인 업체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 아닌 업체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총 공동도급기성실적 건수 :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자사 기성액 합계 :				/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합계 :								

- 주) 1.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는 공동수급자의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2. 이 서식은 신청자가 대기업인 경우만 작성·제출 (공동도급의 대표사가 아닌 경우도 반드시 작성·제출할 것)

[별지 5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하도급기성실적	
				건 수	금 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주)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별지 6호 서식]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신고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공동도급 지분율 (%)	계약일자 / 준공일자	하도급 계약액 (백만원)	하도급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총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		/ 총 하도급기성액 합계 :		백만원 / 총 하도급기성실적 건수 :							

-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2.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이나 당년도 기성실적 발생건은 모두 입력할 것

[별지 8호 서식]

협력업자 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지원분야명		업종 및 등록번호 :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일자	지원내용	지원성과/효과
1					
2					
3					
4					
5					
6					
7					
8					
9					
10					
소 계		재무분야	개사		
		교육분야	개사		
		기술분야 (기술개발비용)	개사		
		기술분야 (공동기술개발)	개사		
		기술분야 (특허 또는 신기술보유 협력업체에 하도급시공)	개사		

[별지 9호 서식]

상생협의회 운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계약년월	공사명	총계 약액	참여구성원(협력업자 등) 현황			운영실적		
	준공년월	발주자명		상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일시 (협약체결일 ,회의일 등)	내용	성과 / 효과
1									
2									
3									
4									
5									
6									
7									
8									
9									
10									
총 상생협의회 운영현장 수 :				/ 운영실적 있는 현장수 :					

